

## ○○○씨 인터넷족보 수보위원회 규약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씨 (인터넷)대동보 수보위원회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본 회의 위치는 ○○○씨 전국중친회 사무실에 둔다.

#### 제 3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충효정신을 계승하여 승조효친사상을 선양·발전하며 중친간의 화합 단결 상부상조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씨 대동보 편집 발간과 인터넷대동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씨 대동보 발간과 인터넷대동보 구축사업을 한다.

### 제 2 장 임 원

제 5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              |                 |             |
|--------------|-----------------|-------------|
| 1. 고문 약간 명   | 2. 위원장 : 1인     | 3. 도유사 : 1인 |
| 4. 부위원장 약간 명 | 5. 총무 : 1인      | 6. 감사 : 3인  |
| 7. 편수감 : 1인  | 8. 편수위원 : 6명 내외 |             |

#### 제 6 조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제23회 ○○○씨 중친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도유사는 ○○○씨 전국중친회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수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총무, 편수감, 편수위원은 수보위원회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3. 감사는 수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 7 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보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체한다.

#### 제 8 조 【책무】

본 회의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는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의 책무를 대행한다.
4. 도유사는 본회의 운영, 편집, 접수를 총괄한다.
5. 총무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본 회의 전반업무와 회계 그리고 수단접수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결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7. 편수감은 본 보첩 편집을 총괄 편집한다.
8. 편수위원은 정서, 편집, 교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수단유사의 선출과 책무】**

1. 수단유사의 선출은 각 문과에서 추천한 자를 수보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수단유사의 책무는 각 문과에 해당하는 보첩의 기초자료(수단)와 수단금 징수 및 보첩 신청 등을 책임진다.

**제 3 장 회 의****제10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설정, 임원선출, 운영 등과 중간점검과 평가 그리고 결산총회 등을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3. 임원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

본 회의 결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재 정****제1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한글판 인터넷족보 등재수단금과 보책보급대금으로 충당하고, 예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1. 한글판 인터넷족보 등재 수단금: 1인당 10,000원(생존자는 출가한 여성 포함한 전종원, 사위 외손은 제외)
2. 보책대금: 필수보책 3권 120,000원+ 파보 권당 40,000원으로 하되 발간부수와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종사편 문헌록 수록비: 건당 100,000원(84년 갑자대동보 수록자 제외)
4. 종사편 사진 수록비: 건당 50,000원 (84년 갑자대동보 수록 분 제외)
5. 인터넷족보 사진 수록비: 건당 10,000원
6. 수단유사의 소요 거마비는 수단금의 10%로 한다.
7. 회계연도는 본 사업 종료일로 한다.

**제 5 장 상 별****제13조 【포상】**

본 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본 사업의 왜곡된 행동이나 고의로 재정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조치하고 본 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사참여자격을 영원히 박탈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서기 2006년 6월 19일 제정 시행한다.

2007年 ○月 ○日

○○○씨 인터넷족보 수보위원회